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57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안호영 · 박희승 · 이성운
박홍배 · 김주영 · 한병도
윤준병 · 허종식 · 서왕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인해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여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 ----- ----- ----- ----- ----- ----- ----- -----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와 같음)
<신 설>	제43조의2(<u>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에 관한 특별법</u>)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전력 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 비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